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6. 5
발 의 자 : 최광렬의원의외 6인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06. 4. 28. 법률 제7935호)에 따라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나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조항 신설(안 제3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3항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제38조”를 “제38조와 제41조”로 하고, “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”을 “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 하고 임시회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는 8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1·2차 정례회를 합하여 38일 이내, 임시회는 42일 이내로 한다.

제6조중 “정례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”를 “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<u>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..</u></p> <p>제2조(개최) <u>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</u></p> <p>제3조(회기) <u>(신 설)</u></p> <p>제6조(준용) <u>정례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</u></p>	<p><u>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와 제41조 <u>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</u></p> <p>제2조(개최) <u>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</u></p> <p>제3조(회기) <u>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는 8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, 제1·2차 정례회를 합하여 38일 이내, 임시회는 42일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제6조(준용) <u>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</u></p>